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 현황과 과제¹⁾



글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1.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2013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스페인 고등법원이 의뢰한 구글 검색결과와 링크 삭제에 대해 내린 판결²⁾로 인해 ‘잊혀질 권리’는 이론적 공방의 영역에서 법적 절차에 따른 실행의 문제가 됐다. 그동안 잊혀질 권리 자체를 놓고 벌어졌던 찬반 진영의 논리와 태도가 달라지고 한층 구체화했다.

판결 이전까지 구글은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 도입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며, 인터넷에 서는 기본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주장해왔다. 구글이 관리하는 영역에 콘텐츠를 올린 경우에만 해당 작성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할 수 있을 뿐, 제3자가 복제하거나 가져다가 발행해 애초 글 게시자의 관리권한 밖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³⁾

하지만 판결 이후 구글은 2014년 5월 30일 유럽연합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검색결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⁴⁾ 삭제요청 신청자들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자신에 관해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연결된 링크를 입력해야 한다. 각각의 링크에 대해서는 해당 링크가 어떻게 자신에 대한 것인지와 함께 검색결과가 부적절하고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적도록 했다. 구글의 삭제요청 서비스가 개설된 첫날에만 약 1만 2,000건의 삭제요청이 접수됐다.⁵⁾ 7월 31일 구글이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CNIL)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7월 18일까지 모두 9만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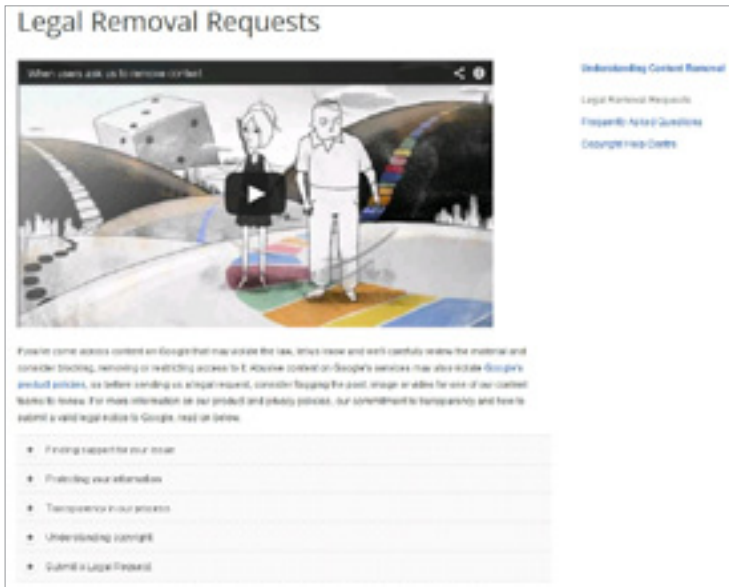
1) 이 논문은 2014년 7월 발간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KISO 저널> 제15권에 실린 필자의 글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 관련 의미와 쟁점’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바른 표기는 ‘잊힐 권리’이나 ‘잊혀질 권리’를 굳어진 표현으로 보아, 이를 사용한다.

2)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사건번호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3) Google Policy Blog(2012, 2, 16.), Our thought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http://googlepolicyeurope.blogspot.kr/2012/02/our-thoughts-on-right-to-be-forgotten.html>

4) Google, “Google’s Search removal request under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https://support.google.com/legal/contact/Ir_eudpa?product=websearch

5) Reuter(2014, 6, 1.), “Google: 12,000 ‘forgotten’ requests on first day.”



2014년 5월 30일 구글이 유럽연합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검색결과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한 웹페이지 캡처(출처 : 구글 웹페이지[<https://support.google.com/legal/answer/3110420?rd=2&hl=en-GB>])

건의 삭제요청이 접수돼 구글 검색결과에서 32만 8,000개의 링크(URL) 삭제를 요구했다.⁶⁾ 국가별 링크 삭제요청은 프랑스 1만 7,500건, 독일 1만 6,500건, 영국 1만 2,000건, 스페인 8,000건, 이탈리아 7,500건 순이었으며, 53%가 삭제됐다. 구글은 삭제요청 링크의 15%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추가정보 제출을 요구했으며, 32%에 대해서는 요청을 기각했다.

삭제요청은 신청자의 국가별 법률에 따라 처리됐으며 해당 국가 내에서만 적용됐다. 독일 구

글(google.de)에서 삭제된 결과는 영국 구글(google.uk)이나 프랑스 구글(google.fr) 또는 글로벌 구글(google.com)에서는 문제없이 노출되는 방식이다. 또한, 링크 삭제요청은 신청자가 자신의 실제 이름을 입력한 검색결과일 경우에만 수용됐고, 다른 검색어를 통한 검색결과에서 링크가 노출된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검색결과에서 링크를 삭제하는 것일 뿐, 해당 정보가 실제 실려 있는 사이트의 삭제와는 무관하다.

구글은 삭제요청을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처리가 아니라, 각각의 삭제요청이 타당한지를 사람이 개별적으로 검토해 처리한다고 공개하며 각각의 삭제요청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대중의 알 권리 및 정보유통권과 균형을 잡는 방법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색결과 화면에 요청자에 관한 남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보에 담긴 공적 이익과 함께 고려해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글은 삭제요청 정보가 정치인과 공인에 관한 경우나, 강력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정부에 의해 발행된 정보 등의 경우는 판단 기준이 어렵고 논쟁적이라고 밝혔다.⁷⁾ 이런 문제로 구글은 잘못 삭제한 검색결과 링크에 대해 항의를 받고 복구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잊혀질 권리를 요청하는 개인들의 요구와 인터넷기업 간

6) Peter Fleischer(2014. 7. 31.), Questionnaire addressed to Search Engines by the Article 29 Working Party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JEU judgmen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7) David Drummond(2014. 7. 10.), "Searching for the right balance", Google Public Policy Blog.

의 분쟁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중재기구의 설치에 들어갔다.⁸⁾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단일한 중재기구를 만들거나, 국가 감독 아래 만드는 걸 계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인터넷에서 정보 삭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면 공적 정보가 위협당하게 된다고도 말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 공적으로 보도된 사람들이 자신들에 관한 불편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감출 수 있지만 삭제처리가 기업들의 알고리즘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유럽연합의 정보 규제기구인 '29조 데이터 보호 워킹파티(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가 2014년 5월 인터넷에서 링크를 삭제하는 문제는 해당 정보의 민감도와 공익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방침이다.

2. 국내에서의 현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국내에서도 2014년 6월 민간과 정부기관이 각각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법제화 검토를 위한 연구반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⁹⁾ 공공 부문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다수의 피해 상황을 반영해 국내에서는 이미 이를 활용한 사업과 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¹⁰⁾

국내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잊혀질 권리'에서 논의되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 조항들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권(제36, 37조)을 두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제44조의 2)'는 신청자의 요청만으로 30일간 해당 정보를 인터넷에서 차단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 조항들을 근거로 '잊혀질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위의 조항들이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정보 처리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잊혀질 권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적법하게 처리된 정보가 단지 시간이 경과해 더 이상 정확하지 않고(inaccurate), 적절하지 않고(inadequate), 관련성이 없고(irrelevant), 과도해 진(excessive) 상황에 대한 삭제요청이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국내에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국내의 인터넷 검색업의 고유성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도 돌출한다. 16년 전 스페인 신문에 실린 부동산 공매 공고에 대한 삭제요청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언론사 사이트의 문서(PDF)가 아닌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대해서만 링크 삭제를 명령했다. 하지만 기사는 기본적으로 언론사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 검색엔진

8) Bloomberg(2014. 5. 27.), "Germany Mulls Arbitration for Web 'Right to Be Forgotten'".

9) 연합뉴스(2014. 8. 3.), "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여부 본격 검토".

10) 매일경제(2013. 10. 18.), "'잊혀질 권리' 비즈니스 활황...남이 떠간 사생활 다 지워드립니다".



과거 신문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화면 캡처
(출처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페이지[newslibrary.naver.com])

은 이를 연결시키는 기능만을 하고 있는 구글이나 Bing) 등 글로벌 검색업체와 국내 검색엔진의 서비스 방식은 달라, 국내엔 ‘잊혀질 권리’ 적용과 관련해 고유한 상황이 전개된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의 대표적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체 서버에 뉴스를 저장하고 서비스하는 포털 기능을 겸하고 있어 언론사의 링크만 제공하는 외국 검색 서비스와 다르다. 특히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리의 경우 1920년부터 1999년까지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겨레신문 등 4개 언론사의 과거 신문을 디지털화(digitizing)해서 네이버 서버

에 두고 서비스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검색결과에 포함해 제공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검색업체에 대해 유럽연합 방식처럼 ‘검색결과 링크 삭제’를 통해서는 ‘잊혀질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 검색업체인 포털 내부에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포털업체가 서비스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콘텐츠에 대해서도 검색결과에서 링크를 삭제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아예 삭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검색결과 내 링크 삭제’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할 수 없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식의 모색이 요구되는 이유가 된다.

3. 판결의 의미 : 인덱싱 제한을 통한 ‘실질적 모호성’의 회복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이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지니는 의미는 판결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정리해서 발표한 판결에 관한 ‘사실 보고서(Factsheet)’에 잘 드러나 있다.¹¹⁾

구글 검색결과 링크 삭제 결정과 잊혀질 권리에 대해, 법원은 잊혀질 권리가 정보주체의 절대적

11) European Commission(2014, 6), Factsheet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Ruling(C-131/12).

권리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며,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결로 분명히 했다.

또한, ‘잊혀질 권리’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유럽연합 정보보호 디렉티브95 제12조 ‘정보주체의 접근권’에 이미 내포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데이터 보호 레귤레이션(GDPR) 안을 통해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기본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실 보고서는 판결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새로운 권리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GDPR 안의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한 개인 정보에 대해 동의 철회를 통한 삭제 중심의 개념인 데 비해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색결과 화면을 삭제 대상으로 확장한 것이 의미가 큰 대목이다. 즉 이전까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나 스스로 작성한 콘텐츠가 실려 있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구로써 잊혀질 권리가 논의되어온 것과 달리, 검색엔진의 검색결과 화면이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된 판결이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은 구글에서 신청인 곤잘레스의 개인정보를 향후 인덱싱과 정보 접근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다.¹²⁾

이 판결로 유럽연합 내에서 검색 사업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배포자(distributer 또는 carrier) 지위를 넘어 발행인(publisher)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셈이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하게 보장하고, 단순 정보 배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 미국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고 서점·신문가판대처럼 단지 판매·배포의 기능을 지닐 뿐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¹³⁾

그러므로 유럽사법재판소가 해당 정보를 그대로 두고 이를 중개하는 검색엔진에 대해 검색결과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한 것은 곧바로 검색엔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된다.

‘잊혀질 권리’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 중에는 모호한 용어에서 비롯한 불필요한 공방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University of East Anglia) 로스쿨의 폴 버널(Paul Bernal) 교수는 정보 검열, 역사기록 삭제와 같은 어감을 갖는 ‘잊혀질 권리’ 대신, ‘삭제할 권리(right to delete)’라는 표현을 쓸 것을 주장한다.¹⁴⁾ 유럽연합 법무 담당 집행위원은 잊혀질 권리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공중의 알 권리와 공익과의 균형 속에서 모색되는 것임을 판결을 통해 강조했는데도 구글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¹⁵⁾

12) 유럽사법재판소 사건번호 C-131/12 ‘Google Spain and Google’. Judgement, 2.

13) Cubby Inc. v. Compuserve Inc. 776 F.Supp 135(S.D.N.Y. 1991).

14) Bernal, P.A.(2011), A Right to Delet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Vol.2, No.2.

15) Bloomberg(2014.8.18), “Google and Right-to-Be-Forgotten Critics Distort Ruling, EU Says”.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잊혀질 권리가 요청되는 근본적 상황과 그 이유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저장된 것 때문이 아니라,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발달에 따라 개인과 관련된 낡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가 광범하게 이용되는 현상에서 비롯했다. 스페인 신문의 공매정보 검색결과처럼 오래된 정보가 맥락과 분리된 채 손쉽게 이용자에게 노출되어 당사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거의 활용되지 않은 채 묻혀 있던 정보를 검색업체가 인덱싱(indexing)을 통해 찾아지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검색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서 제공함으로써 비롯된 피해 상황이다.

검색엔진의 인덱싱 기능은 정보가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반영구적으로 보존되고 광범한 범위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성으로, 디지털 사회의 정보 유통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구글은 검색링크 삭제 판결에 대해 “도서관에는 책이 그대로 있지만, 그 책에 관한 정보를 도서관의 열람카드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반발했지만¹⁶⁾, 디지털로 인덱싱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는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정보라는 중요한 판례가 있다.

인덱싱은 문서의 색인 기능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주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문서의 형태와 지위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논거는 미국에서 판례로 수립됐다. 1989년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와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구별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실질적 모호성(practical obscur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동일한 내용이지만 오프라인의 아날로그 문서와 데이터베이스화된 디지털 문서를 구별했다.¹⁷⁾ 연방대법원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찾을 수 있는 법원의 개별적 재판기록과 한 번에 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구분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전산 기록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을 불허했다.

검색엔진의 인덱싱은 인터넷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접근 가능한(accessible) 모든 정보가 필연적으로 공적인(public) 정보인 것은 아니다.¹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검색엔진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속성을 ‘공적 영역(public domain)’의 정보로 보아, 링크 삭제라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적 영역에서 분리하고자 하는 판결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잊혀질 권리’ 요청이 인덱싱으로 인한 광범한 정보 접근과 이용에서 생겨난 현상인 만큼, 더 이

16) David Drummond(2014. 7. 10.), “Searching for the right balance”, Google Public Policy Blog.

17) U.S. Department of Justice v. 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 489 U.S. 749 (1989).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재판에서 정부의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을 요구한 언론의 요구를 기각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평의회(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는 정보자유법(FOIA)에 근거해 일반인이 접근가능한 정부의 정보를 모아놓은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구축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는 각급 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으로부터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평의회는 논리였다.

18)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은 대학 교직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이지만 정보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정보는 공개돼 있지만 특정한 맥락에서는 모호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로, 공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Michigan Federation of Teachers v. University of Michigan, 481 Mich. 657, 753 N.W.2d 28 (2008).

상 적절하지 않은 정보에 한해서 링크 삭제를 통해 인덱싱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제공한 셈이다. 검색결과 링크 삭제는 해당 정보나 문서에 대한 삭제 없이, 인덱싱을 통해 현저하게 높아진 접근성에 대해 '실질적 모호성'을 회복시키려는 방법적 시도다. 해당 정보의 삭제이거나 역사를 새로 쓰는 행위가 아니라, 검색엔진이 인덱싱을 통해 초래한 과잉 정보 유통 현상에 대해 특정 단어를 통한 '인덱싱 제외(링크 삭제)'라는 기술적 시도를 적용한 방법이다.

4. 판결 이후의 과제

이번 판결은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뛰어넘는 정보 접근 도구로 활용되어온 인터넷의 핵심적 기능인 '검색'에 사회적 통제가 적용된 사례로 의미가 크다.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인덱싱해서 검색결과에 포함시켜 노출해온 검색업체의 사업 관행에 대해, 특정한 유형의 정보는 검색 노출이 적절하지 않다는 새로운 사회적 규제를 기술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는 이제껏 국경을 뛰어넘어 글로벌 단위의 단일한 정보 도구로 기능해온 인터넷 검색엔진에 국가 단위의 기준을 설정하게 만들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검색사업자의 업무 관행에 추가 비용과 절차 소요 등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¹⁹⁾ 국가별로 각기 다른 프라이버시와 명예훼손 등 법적 기준을 반영한 검색결과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유럽연합을 기점으로 한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된다는 것은 검색결과에 대한 링크 삭제 판단에서 해당국 고유의 관례와 법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국내에서도 인터넷 검색엔진에 모든 정보가 인덱싱되어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 검색기업 외부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연합처럼 공공적 이익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와 같은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색결과에 대한 링크 삭제를 요청해 관철시킬 수 있다는 범사회적 요구 발생이 필연적이게 된다. 그동안 검색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검색이라는 편의를 누리는 대가로 개인적 정보의 검색 노출이나 유통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져 온 인식이 바뀔 수 있고 사용자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결국, 이는 검색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즉 정보의 공공적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광범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기준 설정을 구글처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의 자체적 판단에 맡길 것인지, 국가기구나 사회적 제도의 공공적 합의를 반영한 중립적인 새로운 기구나 합의 틀을 만들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이다.

19) 구글은 독일에서 나치 찬양, 태극에서 국왕 모독 등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법을 지켜 관련 정보를 배제한 검색 서비스를 운용해왔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외국 언론들의 평가대로 인터넷 역사에서 주요한 이정표로 불릴 만큼, 정보화 사회의 기본 구조와 프라이버시 영역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다. 그동안 검색업체가 영업적 기밀로 간주해온 알고리즘에 따라 기계적으로 노출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거의 불가능했던 구조에 대해, 사회별로 법률과 규범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링크 삭제라는 검색엔진에 한해 적용되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구현한다는 것은 실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과잉노출되어 피해를 호소하는 비공익적 정보에 대해 수동으로 인덱싱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콘텐츠가 인터넷 검색결과로 인해 생기는 유사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자의로 혹은 제3자에 의해 노출된 사생활 정보, 명예훼손성 정보, 미성년자 시절에 게재한 각종 콘텐츠, 전과나 신용기록 등 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진 개인 관련 정보 등을 검색결과에서 삭제해야 하는지가 대상이다.

각각의 요청은 사안별로 공익성과 관련자의 프라이버시 등 사적 이익 간의 비교 형량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고, 이는 일개 기업의 내부적 절차와 기준에만 맡겨두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투명성과 책임성 아래 처리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안게 됐다. 인터넷이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게 된 데 따라, 이를 전적으로 기업과 기술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합의를 적용시키기 위해 일종의 ‘잊혀질 권리 중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의 모색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